

■■■■ Question 현재 시행 중인 건설안전체험과 관련하여 교육이수 및 이동을 위해 버스임차료 및 식사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도시락 비용이 산업안전관리비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 도중 도시락이 아닌 일반식당 또는 체험교육장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6810]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12.5)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이동 중 교육과 관련하여 밥을 먹어야 할 시간에 체험도중 제공되는 식사라면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Question 외부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발판이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나 감독자가 보았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발판을 매어서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때 이 발판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4845]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1항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는 작업발판(안전발판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발판은 안전발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작업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모든 발판을 의미하며 안전발판과 작업발판을 특별히 구별해야 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서 모두 공사비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Question 근로자가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병세 악화 우려 등으로 병가, 휴가 등으로 쉬었으면 하는데 본인은 일할 능력이 있다고 계속 출근을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할 수 있는지, 또 근로금지시 필요한 서류 등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진단서를 받았는데 근로능력 가능여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능력 가능여부 등이 첨부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수번호 : 6580]

